

<붙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77호>

□ **입법예고 기간** : '16. 8. 5 ~ 9.19

□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안 제24조의4, 5]

- 분쟁조정 요청시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2. 보복행위에 대한 원인 유형 추가 [안 제19조]

- 보복조치가 성립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추가

3.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 [안 제25조의4]

- 상습 범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청된 분쟁사건 및 조정조서가 적성된 분쟁 사건부터 적용)

<붙임 2>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하고, 상습범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의4, 제24조의5)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정비(안 제1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

다. 민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안 제25조의4)

상습범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제24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4조의4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종료한다.

1. 조정요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요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요청을 한 경우

3. 조정요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조정요청을 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요청이 취하되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경우에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요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⑩ 제8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4조의5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5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판상 화해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u></p>
<p>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p> <p><u><신 설></u></p>	<p>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종료한다.</u></p> <p>1. <u>조정요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요청을 한 경우</u></p> <p>2. <u>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조정사항이 아</u></p>

- ② (생략)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년 사안에 관하여 조정요청을 한 경우

3. 조정요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조정요청을 한 경우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⑧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요청이 취하되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8항 단서의 경우에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요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⑩ 제8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후단 삭제>

② -----

----- 작성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의4(상습범위반사업자 명
단공표)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25조의4(상습범위반사업자 명
단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위를 구성하는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200-4584